

2022 긴급주거지원사업

<p>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법령 : 「긴급복지사업」 제9조 제1항 다호 • 경제위기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긴급지원대상자)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자활을 지원
<p>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p>위기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사유(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主)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p>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p>문 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등록이 되어있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